

감 사 보 고 서

- 2024년 결산 (종합) -

□ 개 요

1. 감사방법

사무처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년 상·하반기 경영실적분석 및 예산집행내역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중요하거나 특이한 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요청하였으며 각 부서 국장 및 팀장을 면담하였습니다.

- 2024년도 하반기 결산 감사 일정 : 2025.2.18.~ 21. (총 4일)

2. 감사의 취지와 중점 사항

금번 결산감사에서는 이사회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협회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중점감사항목으로 정하여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1. 감사결과

2024년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수입(전기 이월액 제외)과 지출은 각각 19억 3천만원과 22억 2천만원으로 2.9억원 가량의 수지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주 수입원인 신탁수수료의 실적이 예산 대비 3.0억원 가량 감소하였지만 지출은 예산에 맞추어 집행한 결과입니다.

2. 권고사항

신탁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액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위험요소를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고정비 성격이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관리수수료율의 인상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 2. 21.

감 사 고 방 선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tylized, cursive characters.

감사 보고서

- 2024년 결산(종합) -

■ 감사개요

감사인은 협회의 2024년 상·하반기 감사*를 통해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및 기타의 사업(관행적 사업 및 공공사업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4년 11월 26~29일 / 2024년 12월 13일, 18~20일 /
2025년 2월 18~21일 / 2025년 3월 10~11일

아울러 감사인은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경영진과 일선 직원과의 정서적 차이와 인식 등에 관해서도 소상히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발전적 대안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회는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운영 방식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 집행부가 협회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인은 1년의 기간을 정해 현 집행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법인의 감사는 피감 대상의 잘못만을 들춰내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고유 기능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 감사인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집행부와 회원, 사무 종사원은 2인3각의 형태로 서로를 믿고 지지해야 비로소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감사인은 협회 사무국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 도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현 집행부와 협회 이사회에 대한 당부를 본 감사보고서에 담고자 합니다.

○ 사무국

협회는 국가의 인증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건전 재정은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제일의 조건이자 경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회의 재정은 수년간에 걸쳐 부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경영진의 방만하고 무능한 업무수행이 빚어낸 사태라는 점을 금번 감사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의 재정 관련 사항은 현 집행부가 최우선적으로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본 감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국의 업무 분야에 집중하였으며 본 감사 보고서에 한정적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정관 개정

◦ 감사인은 협회가 일찍이 김지환 전전무에게 방만과 무능 경영, 비전 부재, 체계를 무시한 보고 누락, 계약의 정합성 확보 방기 등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지환 전전무는 현재 자신의 사임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회장과 쟁송 중에 있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감사인은 김지환 전전무에 대한 포괄적 지적에 머물고자 합니다.

다만, 전무이사제 폐지 혹은 선임 유보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의사 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전무이사 선임 의무화 조항인 정관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직제개편과 동시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규정 개정

◦ 전무이사제 폐지 혹은 선임 유보를 위한 정관 개정에 따라 정관과 제규정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회의 능률 향상을 위한 제규정 개정이 시급합니다. 먼저 ‘회장과 전무이사의 직무규정’ 및 ‘전무이사 선임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 또는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후속으로 ‘위임전결규정’을 즉시 전부 개정(전문가 자문 및 음실련 사례 참고)해야 합니다.

가. 직인 및 인감 사용관리 규정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2021년, 2022년 인감관리대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회의 인감은 협회의 상징이자 존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치 관리대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의 ‘문서관리 규정’ 제31조(인장)는 “인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인 및 사용인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직인 및 인감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서관리 규정’에 적시된 직인 및 인감 사용에 대한 위임 규정이 ‘직인 및 사용인 규정’이 아니라 ‘직인 및 인감 사용관리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인의 지적이 맞다면 ‘문서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직인 및 인감 사용관리 규정’에 인감관리대장의 보존연한 및 폐지 기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따르면 경영지원국 내 총무/서무부서에서 ‘인장(공인인증서 포함)의 제작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년, 2022년의 인감관리 대장의 부존재 사태를 야기한 담당자 전원과 최종

결재권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를 위한 경중의 의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 신탁계약약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신탁계약약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악성민원의 급증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로서 회원의 충실의무를 신탁계약약관에 표기하고 정관 제14조(회원의 상벌)에 위배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을 권고합니다.

회원 유치에 협회에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임을 감사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부 회원이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협회의 위상이나 신뢰도에 흠집을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고, 모든 회원은 권리 주장보다 회원의 의무 준수가 우선이라는 성숙된 인식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3. 계약 업무

·최근 3년간의 계약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 협회의 모든 구성원은 계약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재인식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회가 당사자가 되는 일체의 계약은 협회의 재정과 매우 밀접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재무건전성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 대상 계약 교육 및 컨설팅 실시를 권고하며 계약 별 감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가. 음원전달 연동기능(DDEX) 구축사업

2024년 7월 15일, 협회와 다날엔터테인먼트(이하 '다날')가 체결한 '음원전달 연동기능(DDEX) 구축사업'의 경우 발주자인 협회의 투입비용 대비 성과 지표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차후 유사한 계약의 경우 비교 견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나. '홈페이지 재구축 계약'

2024년 10월 28일, 주식회사 프리아이와 '홈페이지 재구축 계약(사업비 1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이로부터 불과 20일 후 동 회사와 '2024년 시스템 전환 및 안정화 프로젝트' 사업(사업비 10,000,000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 담당자의 설명은 '홈페이지 재구축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점검 지적사항인 관리저작물 목록 등 정보공개에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감사인이 수급하였으나, 20일 후 체결한 ‘2024년 시스템 전환 및 안정화 프로젝트’ 사업 계약은 채리소프트의 특허권 주장 및 별도 사용료 요구, 사용중지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설명을 접했습니다.

이는 협회가 애초 채리소프트와 체결한 계약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아님이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으며, 두 건의 계약을 동시에 추진했다면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리소프트와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약의 유·불리에 대한 감사 결론 도출이 적절하지 않으나 본 건을 통해 향후 채리소프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와 기타의 계약에서도 지적재산권 처리를 협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할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여, 향후 채리소프트와 분쟁에서 협회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분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는 계약 담당자의 귀책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을 소급하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인의 의견입니다.

다. 케이팝싱크 계약 관련

‘케이팝싱크 신탁음원사용료 MG 연체 건’은 일차적으로 협회가 상대자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 완결성 및 정합성 확보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 연관인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진행 상황은 협회가 최종적으로 금년 2월 19일, 계약상대자인 케이팝싱크에 MG 2차분 잔여금 납부 촉구(2차 내용증명 발송) 서한을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본 감사보고서 작성 시 결론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감사인은 본 건에 대해 현재 상황을 포함하여 향후에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계약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이어갈 것이며 주의적으로 본 건에 대한 상시 보고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4. KMDC 릴 테이프 디지털 변환 사업

시급성이 요구되는 본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시스템 속성 상 계약 회차가 늘어날수록 사업수행 소요 비용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바 차후 계약부터는 비용 절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권고합니다.

인건비 및 기타의 물가상승 등을 근거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증액을 권

고하며 기 디지털 변환 음원의 권리자가 협회를 탈퇴할 경우, 소유권 행사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5. 사업계획 수립의 철저화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비 10.5%, 경상비 3.1%를 증액하고 기타 예산 12.3%를 감액 편성하여 2025년 일반회계는 24년 대비 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매출 목표치 산정의 정밀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일반회계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금년도 하반기 감사보고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바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도 객관적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 사업비

사업비 중 대외 협력비 항 국고보조금 사업 공모 지원 경비를 5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하여, 공모사업 수주의 성공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라도 담당자의 설명대로 자부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인력 투입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기대효과 면에서도 수주의 이익이 월등히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업무용 차량 관련

업무용 차량 2대의 렌트비 2천 4십만여원 편성에 대해 업무용 차량 2대의 유지 필요성 및 소요와 활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지표가 부재합니다. 이는 방만한 경영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2027년 3월까지로 중도 해약 시 상당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을 유지하되 차량 관리와 운행일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6. 협회 사업심사 위원회 구성(1회성)

협회 부서별 사업(공공사업의 경우도 예외 불인정)을 심사하여 관리 용 비용 대비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지표화하여 협회의 사업규모 및 수행방식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리비용 대비,

- 관리 수수료 수입이 120/100에 미달하는 경우 축소 및 통폐합
- 관리 수수료 수입이 100/100에 미달하는 경우 폐지, 폐기 및 종료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존치

7. 미분배금 건

미분배금은 협회 신뢰도 저하의 제1 요인이 되므로 조기 분배 및 발생원인 해소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기술력이나 저작권자의 인식에 기하여 미분배금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미분배금의 조기 분배를 위한 방안 마련이 최선이므로 이에 대한 창의적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사회

이사회는 우리 협회를 책임지는 중추적 기구요, 견인해 가는 역할입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건대 협회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현 집행부가 소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 후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 집행부의 성과 등에 대해 논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현재 위기를 타개하고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구인 이사회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감사인은 이사 여러분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집약된 이사회를 통해 협회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감사인은 협회 이사님들에게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회 석상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논쟁은 반드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적 과정이어야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상대방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협회 이사회에서의 부정적 면이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현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협회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는 구실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본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협회의 직원들은 이 시간에도 정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협회의 중추적 기구인 이사회가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면 이는 해당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하건대 앞으로의 이사회는 사적인 감정과 편가르기식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사회 모습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인은 이사회 의장에게도 이사회 권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일관된 태도로 이사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여러 이사님들께는 이사회가 원만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감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감사 한용진

